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27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구합6888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 고	[redacted]
피 고	[redacted]구청장
변 론 종 결	2016. 4. 27.
판 결 선 고	2016. 5. 1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5. 2. 11. 원고에게 한 취득세 94,162,170원, 지방교육세 7,886,610원, 농어촌특별세 3,943,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27

가. 원고는 2012. 6. 14. 농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, 2013. 10. 8.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237 전 886㎡와 같은 리 237-1 과수원 21,792㎡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 한다)를 취득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3. 10. 8.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4. 1. 1.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,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면제신청을 하였고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,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였다.

다. 피고는 2014. 9. 25.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,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. 2. 11.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94,162,170원, 지방교육세 7,886,610원, 농어촌특별세 3,943,300원을 부과·고지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하였다.

라.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, [redacted]도지사는 2015. 6. 24.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 내지 3,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지 개량(경지)작업, 진입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27

로 및 농로 확보 작업을 시행하고 산수유 묘목 등을 식재·관리하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여 왔는바, 이와 달리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, 제94조 제1호에 의하면,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. 12. 31.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.

이 사건에서 보건대, 을 제3, 4, 7, 9, 10,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2014. 9. 25.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실나무 등이 심어져 있었으나 잡풀이 무성히 자라고 있었고 농작물에 대한 재배관리를 하고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실,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산수유가 식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자 피고는 2015. 3. 6. 다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,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일부 산수유 묘목과 잡풀이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식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, 한편 원고는 2013. 1. 29.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가축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13. 2. 15. 피고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았고, 이에 불복하여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, 이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27

[redacted]지방법원은 2014. 12. 4. 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(2013구합13526),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[redacted]고등법원은 2015. 4. 8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(2015누30052),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(대법원 2015두41579)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가축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신축하려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, 갑 제3호증, 갑 제4호증의 1, 2,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.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당초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최복규

판사 김선영

판사 홍영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27

관계 법령

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4. 1. 1.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11조(농업법인에 대한 감면)

①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(이하 이 조에서 "농업법인"이라 한다)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,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
제94조(감면된 취득세의 추징)

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2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4. 1. 1.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)

제178조(감면된 취득세의 추징)

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2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부칙 <법률 제12175호, 2014.1.1.>

제1조(시행일)

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27

한다.

제3조(일반적 적용례)

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6조(일반적 경과조치)

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끝.